

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9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- 가. 제안이유
 -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등포동공공복합시설 내 설치 예정인 「가칭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시설명칭: (가칭)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
 - 위치: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66외 1필지
 - 준공시기: 2024. 6. 12.(예정)
 - 규모: 면적 3156.8㎡
 - 소요예산: 6,568백만원(시비 4,063, 구비 2,505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동의안은

-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「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(가칭)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,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조치 등의 자치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(가칭)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며, 주민커뮤니티 공간(1층 로비), 체육관(5층)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(3~4층)으로 구성될 예정임.
- 수탁자 선정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·위탁할 예정이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기간(2024. 7. 1 ~ 2029. 6. 30.)으로 예정되어 있음.
- 본 위탁 사무는 소외된 계층 발굴·지원 및 구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치사무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에 의거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, 공신력, 전문성 등 공정하고 종합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,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정기적인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27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등포동공공복합시설 내 설치 예정인 「가칭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 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규위탁 개요

- 1) 위탁사무명: (가칭)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
- 2) 추진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및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)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의 위탁)
- 3) 필요성: 주변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1인 중·장년층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- 4) 위탁사무 내용
 - (가칭)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
 -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」에서 규정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조치
 -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‘구’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
5) 시설현황

- 위탁시설명: (가칭)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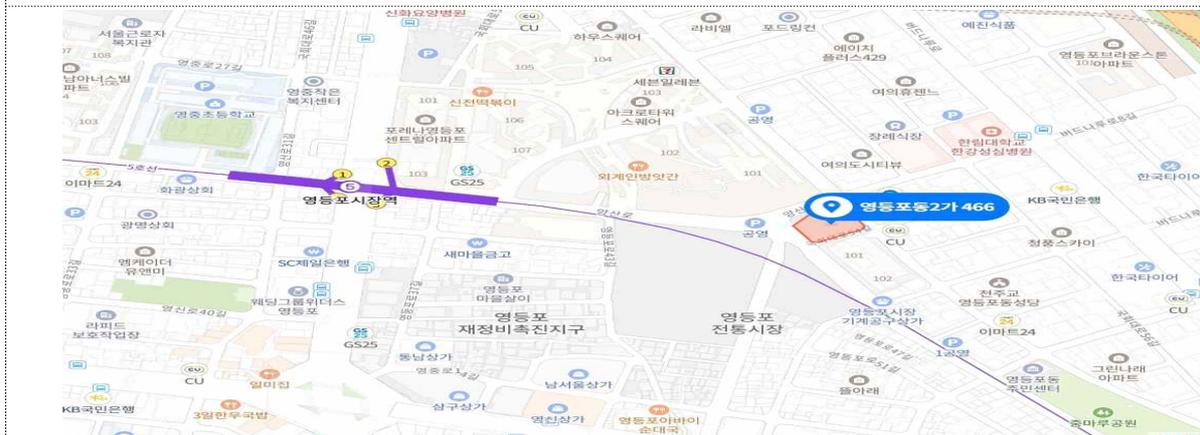
- 위탁시설 및 사업내용

층 별	면적(m ²)	시 설	사 업 내 용
1층	338.6	로비(쉼터) 등	주민커뮤니티 공간
3~4층	1,869.9	종합사회복지관 (다목적교육실, 사무실, 경로식당, 프로그램실 등)	사례관리, 지역조직화, 서비스제공, 시설관리 등
5층	974.4	체육관, 프로그램실, 탈의실, 샤워실 등	체육관 대관,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

∞ 공공복합시설 현황 ∞

- 위 치: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66외 1필지
- 규 모: 대지면적 1,712.8㎡/ 연면적 8,558.8㎡
- 준공시기: 2024. 6. 12.(예정)
- 층별 주요시설 현황

층 별	면적(㎡)	용 도	비고(㎡)
합 계	8,558.8		
지상 5층	974.4	체육관	
지상 4층	895.5	종합사회복지관	
지상 3층	948.3	종합사회복지관	
지상 2층	867.0	영등포동주민센터	
지상 1층	785.3	어린이집, 로비(쉼터)	어린이집: 446.7 공용공간: 338.6
지하 1~3층	4,088.3	주차장(76대), 창고, 기계실 등	



6) 위탁기간: 5년('24. 7. 1.~'29. 6. 30 예정)

7)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8) 소요예산: 6,568백만원(시비 4,063, 구비 2,505) * 5년간 추계

연도별	세부 내역				비고
	합계	인건비	사업비	운영비	
합계	6,568	4,646	1,111	811	
2024년	683	483	116	84	시비 70%, 구비 30%
2025년	1,407	995	238	174	시비 65%, 구비 35%
2026년	1,449	1,025	245	179	시비 60%, 구비 40%
2027년	1,492	1,056	252	184	시비 55%, 구비 45%
2028년	1,537	1,087	260	190	시비 50%, 구비 50%

※ 시비 보조금 보조율: 22년 80% ~ 28년 50%(매년 5%씩 하향)

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서울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 및 區 소관 사무
- 2)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
 - 본 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소외된 계층 발굴 지원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 구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
- 3)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-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로 복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민간 기관을 통해 운영·관리시 더 효율적임
- 4)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절 여부
 - 책임과 명의 부여를 통해 수탁기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

3. 추진경과

- 가. '18. 03. 공공복합시설 설립기본계획(안) 수립
- 나. '18. 04.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
- 다. '19. 04.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완료
- 라. '20. 12. 설계용역 준공
- 마. '21. 09. 공사착공
- 바. '23. 11.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
- 사. '23. 12.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
- 아. '24. 01.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적격 선정 심사
- 자. '24. 05.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
- 차. '24. 09.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운영(예정)